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21(수)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3. 검토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2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39,987,276,701	903,992,899,416	676,766,981,182	227,225,918,234
일반회계	821,824,651,001	887,199,647,186	667,761,923,172	219,437,724,014
특별회계	18,162,625,700	16,793,252,230	9,005,058,010	7,788,194,220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2,968,679,616	21,535,322,570	0	21,284,764,096	△550,768,166	0	131,987,920,118
일반회계	50,768,679,616	20,349,055,030	0	21,251,764,906	△550,768,166	0	127,618,992,628
특별회계	2,200,000,000	1,186,267,540	0	32,999,190	0	0	4,368,927,490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3,992,899,416원으로 예산현액 839,987,276,701원보다 64,005,622,715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5%인 676,766,981,18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25,918,234원임.
- 이 중 명시이월비 52,986,679,616원, 사고이월비 21,535,322,57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733,995,93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31,987,920,118	74,652,631,000	57,335,289,118	
일반회계	127,618,992,628	68,215,001,000	59,403,991,628	
특별회계	4,368,927,490	6,437,630,000	△2,068,702,510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6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6,437,63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9,403,991,628원과 특별회계 △2,068,702,510원을 합한 57,335,289,118원이 2023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2,47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0	2,840,656,150
일반회계	32,33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0	2,840,656,150
특별회계	140,000,000	0	0	0	0

-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473,993,000원으로서 전년도 15,715,733,000원보다 16,758,260,000원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8건으로 7,256,90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416,247,85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840,656,1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8,957	1,003	10,938	9,934	39,96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52	52	0	153
재 난 관 리 기 금	7,662	△849	3,978	4,827	6,8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303	497	497	0	17,800
중소기업육성기금	5,170	742	3,839	3,097	5,912
청 년 미 래 기 금	1,532	528	528	0	2,060
자 활 기 금	1,049	△133	26	159	916
노 인 복 지 기 금	353	△1	6	7	352
양 성 평 등 기 금	456	5	55	50	461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 여 기 금	490	△13	25	38	477
재 활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기 금	290	19	26	7	309
옥외광고발전기금	1,138	△4	160	164	1,134
도로굴착복구기금	2,484	207	1,682	1,475	2,691
식 품 진 흥 기 금	929	△46	64	110	883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8,957,445,18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37,544,44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34,459,692원이고 차인잔액은 39,960,529,938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 사무국	3,557,487	2,819,116	738,371	0	569,041	169,330	

○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35억 5,748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2%인 28억 1,911만 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3,837만 1천원(20.8%)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3,557,487	2,819,116	79.2	738,371	20.8	
선진의회상정립	1,058,974	933,067	88.1	125,907	11.9	
의정활동지원	80,451	63,187	78.5	17,264	21.5	
열린의회운영	39,784	35,984	90.4	3,800	9.6	
의정홍보 활동전개	96,873	96,285	99.4	588	0.6	
구의회청사관리	131,250	92,603	70.6	38,647	29.4	
의회비지원	690,616	626,577	90.7	64,039	9.3	
의회장비보강	20,000	18,431	92.2	1,569	7.8	
행정운영경비	2,498,513	1,886,049	75.5	612,464	24.5	
인력운영비	2,384,348	1,798,366	75.4	585,982	24.6	
기본경비	114,165	87,683	76.8	26,482	23.2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7억 3,837만 1천 원(불용율 20.8%)을 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 집행잔액은 1억 2,590만 7천 원(불용율 11.9%)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6억 1,246만 4천 원(불용율 24.5%)임.

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명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비 고
계	738,371	0	569,041	169,330	
의정 활동 지원	17,264	0	8,750	8,514	
열린 의회 운영	3,800	0	0	3,800	
의정 홍보 활동 전개	588	0	0	588	
구의회청사관리	38,647	0	0	38,647	
의회비지원	64,039	0	0	64,039	
의회장비보강	1,569	0	0	1,569	
인력운영비	585,982	0	560,291	25,691	
기본경비	26,482	0	0	26,482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7억 3,837만 1천 원(불용율 20.8%)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5억 6,904만 1천 원으로 77.1%임.
- 지출잔액은 1억 6,933만원으로 22.9%임.

○ 집행잔액 총액에서 77.1%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공무원 교육여비 : 8,750천원
→ 코로나19로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 및 비대면 교육 실시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 560,291천원
→ 소속직원 결원 발생 및 파견직원 보수 등 집행부 지급

○ 집행잔액 총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특정업무경비 등 : 8,514천원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 3,800천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사무관리비 등 : 588천원
-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 중 시설비 등 : 38,647천원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 64,039천원
- ‘의회장비보강’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 1,569천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 중 기타직보수 등 : 52,173천원

※ 결산서 238p, 심사보조자료 5~8p 참고

다. 검토의견

1) 연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고
			금액	비율(%)	
2022	3,557,487	2,819,116	738,371	20.8	
2021	3,349,884	2,993,932	355,952	10.6	
2020	3,138,218	2,929,747	208,470	6.6	
2019	3,175,181	2,962,573	212,608	6.7	
2018	3,354,711	2,890,845	463,866	13.8	

2)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3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의정활동지원	행사운영비	19,000	10,849	8,151	43
	공무원 교육여비	600	0	600	100
구의회 청사관리	시설비	50,000	12,661	37,339	75
의회비지원	의원국내여비	11,500	6,026	5,474	48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5,200	2,420	2,780	54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6,200	6,635	9,565	59
인력운영비	보수	1,657,384	1,127,869	529,515	32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25	105	120	53
	국내여비	19,488	9,040	10,448	54

-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억 3,837만 1천 원으로 2021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0.2% 증가하였으며,
- 이는 의정활동지원 및 구의회 청사관리, 의회비지원 등의 세부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행사와 교육 등이 취소나 축소되고, 소속직원 결원 발생 및 파견직원 보수 등이 집행부에서 지급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